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2985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아량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8호), 서윤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39호)을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2021.12.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송아량 의원 외 9명, 서윤기 의원 외 14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 삭제 및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인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증가시키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제4호 서식>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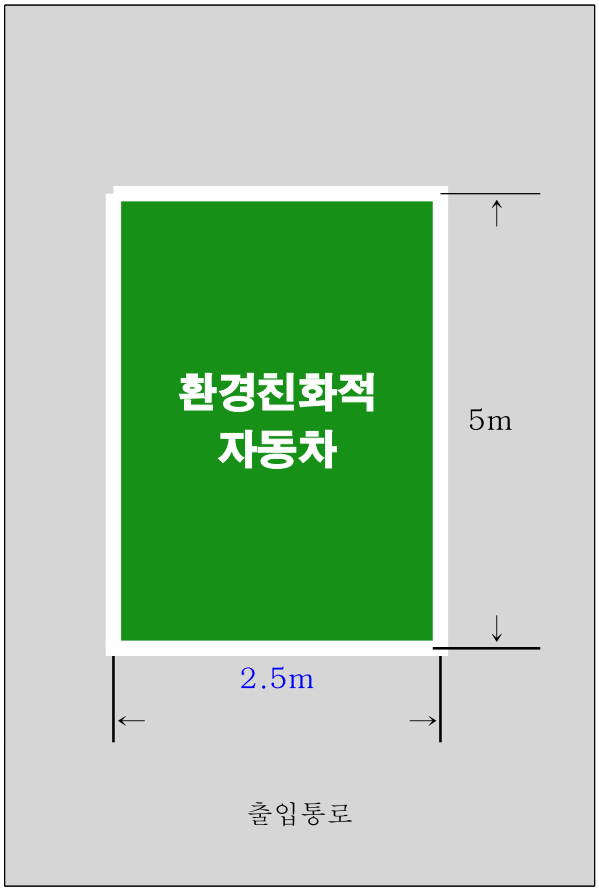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5% ----------. <삭 제>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별도 제4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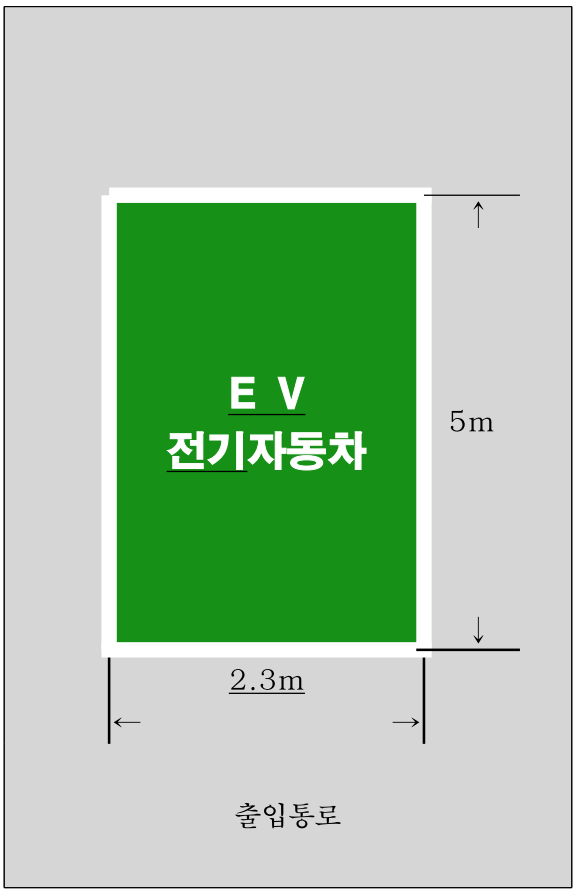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도 제4호 서식>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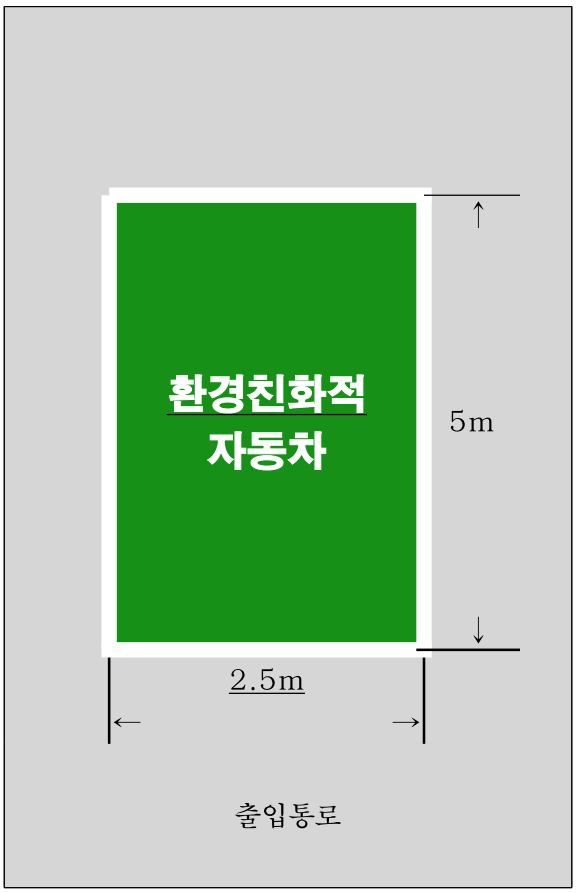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

	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